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공판진행상황

1. 사건진행현황

가. 일반현황

▣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공직선거법위반 등**

● 형사 21부 : 재판장 이○○, 이○○(주심), 오○○

▣ **피고인 원세훈**

▣ **진행상황**

● 6. 14. 접수 (불구속 구공판)

● 공판기일

- 8. 26.(1차) 9. 2.(2차) 9. 9.(3차) 9. 16.(4차) 9. 23.(5차) 9. 30.(6차) 10. 7.(7차) 10. 14.(8차) 10. 21.(9차) 10.30.(10차), 11. 4.(11차), 11. 6.(12차), 11. 11.(13차), 11. 22.(14차), 11.28.(15차), 12.2.(16차), 12.5.(17차), 12.9.(18차), 12. 16.(19차), 12. 23.(20차), 1. 6.(21차) 실시

- 1. 13. 공판준비기일 실시

- 1. 27. 공판준비기일 예정

나. 별건 진행현황

▣ **알선수재 사건**

● 서울중앙지법 2013고합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형사 21부 : 재판장 이○○, 이○○(주심), 오○○

● 7. 25. 접수 (구속기소)

- 황보건설 억대 뇌물 혐의 (건설업자 황모씨로부터 1억원대 현금 등을 받고, 황보건설이 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
- 7. 5. 영장청구, 7. 10. 영장발부
- 구속만료 : 1. 24.

▣ **2014. 1. 22. 판결선고**

- 징역 2년, 추징 162,752,000원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는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판결선고**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선고함이 일반적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서 병합 진행되어도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 선고 가능

2. 공소장 변경의 과정

가. 당초 공소장

▣ **이 사건 공소장은 다음과 같이 7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제1항 :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 제2항 : 국정원의 직무범위
- 제3항 : 피고인의 국정원 운영 방침
- 제4항 : 사이버 국정홍보의 강화와 심리전단의 확충
- 제5항 :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지시
- 제6항 : 심리전단 직원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역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명의 직원이
-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와 같이 총 5,694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함

-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범죄행위를 실행함과 아울러
-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함

● 제7항 : 결어

- 피고인, 3차장, 심리전단장, 사이버팀 팀장 및 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함

●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는 공직선거법위반(255조 3항 2호), 국정원법위반(18조 1항), 공동정범(형법 30조), 상상적경합(형법 40조)임

- 범죄일람표 기재 약 3년간의 5,694회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봄

나. 제1차 공소장변경

▣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의하여 추가된 범죄사실은 위 '제6항의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트위터를 이용한 범죄사실'

● 사이버팀 직원 김○○이 2012. 9. 1. 트위터 계정에 '민주, 안철수, 보조금 152억 받으려 눈속임 정당 만드나…' 라는 글을 게시함을 비롯하여, 2012. 9. 1.부터 2012. 12. 1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서 5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 공소장 변경 허가

● 2013. 10. 30. 공소장변경 허가결정

●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인정" ☞ 공소사실 자체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지, 유무죄 또는 범죄성립 가부 판단을 한

것 아님

다. 제2차 공소장변경

▣ **공소사실 제6항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철회.변경 및 추가함**

- 범죄일람표(1), (2), (3), (4)를 일부 축소 및 대체
- 트위터 관련 범죄일람표(5)의 55,689건을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해당 범죄일람표 (5) 647,443건과 정치관여(비선거운동) 범죄일람표 (6) 562,785건으로 교체 및 추가
- 트위터 관련 선거운동 건수를 55,689건에서 647,443건으로 변경함

▣ **공소장 변경 허가**

- 재판부 2013. 11. 28. 제2차 공소장 변경 허가결정
-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인정"
-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 자체의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는 "최종 판단에서 고려할 것"

3. 주요 쟁점 및 특이사항

가. 주요 쟁점

▣ **실체적 쟁점**

-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범위를 일탈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 **절차적, 증거법적 쟁점**

- 공소사실로 적시된 수많은 트위터 계정 등 구체적 범행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 미국의 트위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국제공조) 등 증거로 제시된 계정들에 대한 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나. 공판진행 관련 특이사항

▣ 1차공판 요지 (8. 26.)

○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 발언
- "정부·여당을 비방하는 개인이나 세력이 있다면 이는 우리 국민이라도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
-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종북좌파에 이기는 길이며 야당 등의 무분별한 폄훼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 "그땐 판사도 아마 적이 돼서 사법처리가 안될 거야. 다 똑같은 놈들일 텐데"

○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검찰 주장)
- 심리전단 직원 1명당 하루에 3~4건씩 매일 정부·여당에 대한 찬성글, 야당·시민단체에 대한 반대글을 작성토록 한 뒤 게시글 목록을 제출받음
- 심리전단 1개팀(20명)이 하루 60~80건, 매월 1200~1600건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됨
- 심리전단은 4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3개팀이 '댓글달기'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임

▣ 2차공판 요지 (9. 2.)

○ 민○○ 전 심리전단 단장 증인신문
-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며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하여 부인
-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활동은 '개인 차원의 일' 로 돌리고, 여직원(김○○)이 오피스텔에서 머무는 동안 노트북에 담겨 있던 파일 187개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선거 관여활동을 해서 지운 것은 아닐 것" 이라며 "(삭제작업은) 국정원 업무수칙상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대처방식의 연장선이라는 취지로 답변
-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11월23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연평도 포격, 그날 잊었나' 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특정 야당후보를 거론하며 비방글을 게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고, 개인적으로 한 일일 가능성이 있어 살펴봐야 한다" 고 답변하였고, 검찰이 "이런 글이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은 인정하느냐" 고 되묻자 "특정후보를 거명했다는 점에서는…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 답변
- '종북' 의 기준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 못함
- 피고인측의 비공개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 가림막 설치한 채 진행

○ 민○○ 전 단장이 여직원(김○○)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툭툭 털고 일어서기 쉽지 않겠지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3차공판 요지 (9. 9.)

○ 국정원, 경찰, 정치권 관계자 통화기록 제출
- 2012년 12월 11~16일 원세훈 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 경찰 관계자, 정치권 관계자 등 총 10명의 상호 통화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 이○○ 전 국정원 3차장 증인신문
- "북한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가이드라인) 전혀 없다. 오히려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활동이 그런 것을 (정치인이나 정당 비판 등을) 특정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 답변
- "군으로 치면 군에서 적을 제압하라고 하면서 민간인을 사살하지 말라고 해도 군인이 현장에 가보면 적군과 민간인 구분이 곤란한 상황이 있고, 적군과 민간인을 구분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민간인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넓은 의미에서 종북좌파 척결에 대한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면 된다"

▣ 4차공판 요지 (9. 16.)

○ 이○○ 전 심리전단 기획관 증인신문
- 개그맨(정○○)의 발언까지 북한 관련 발언으로 생각했느냐?" 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

○ 최○○ 전 심리전단 안보3팀장
- "외부조력자를 고용한게 누구냐" 는 검사의 질문에 "팀장인 저다. 매달 300만원씩 주고 고용했다 "고 답변

○ 최○○ 전 팀장이 여직원(김○○)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 "고생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추억으로 남을 것이고, 위기에 잘 대처했다는 영광도 남을 거예요"

▣ 5차공판 요지 (9. 23.)

○ 여직원(김○○) 증인신문
- 경찰조사 시 외부조력자 관련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검찰조사 시 번복한 사실 인정 : 경찰조사 시에는 "민간인 조력자 이○○을 지인의 소개로 2012년 여름 두어 차례 만났고 인적사항도 직접 건네받았으며 오늘의 유머 아이디도 만들어 주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조사 시 "이○○은 파트장인 이○○이 섭외한 것이고, 자신은 2013. 1.경 이○○을 처음 만났다" 고 진술을 번복함

▣ 6차공판 요지 (9. 30.)

○ 이○○ 전 심리전담 3팀 5파트장 증인신문
- 2012년 8월28일 대통령 비판에 대한 반박글 게시 차원에서 해당 영상을 올리라는 지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고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해 이명박 대통령의 성과 및 인성을 찬양하는 내용인 " '오빤 엠비스타일' 장안의 화제"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올림

○ 민간인 외부조력자 이○○ 증인신문
- 2011년 연말부터 월평균 300만원을 받고 사이버 활동을 한 사실을 시인

- 오늘의 유머 등에 박지원·이정희·나꼼수 등을 비판하는 글을 쓴 데 대해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서, 쓰다 보면 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꼭 북한 관련이 아니더라도 올린 것 같다" 고 답변

▣ 7차공판 요지 (10. 7.)

○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윤○○ 증인신문
- "모든 사이버 활동은 상부로부터 지휘체계를 통해 내려온 '이슈 및 논지'에 따라 행해졌다. 이슈 및 논지의 선정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주요 내용은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던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과 흡사했다" 고 답변

▣ 9차 공판 (10. 21.)

● 제1차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범죄의 기본적 사실 동일성에 관한 공방

▣ 10차 공판 (10. 30.)

● 재판부, 제1차 공소장변경 허가

-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능력 등으로 변호인측에서 탄핵할 기회 주어질 것임"

▣ 12차 공판 (11. 11.)

● 피고인측, "검찰이 특정 키워드를 요청해 빅데이터 업체에서 트위터 글 2800만건을 받았다.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준수했는지 의심된다" 고 주장

▣ 14차 공판 (11. 22.)

● 제2차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공방

● 트위터 글의 개수와 실질적 개수 등에 관하여 공방

▣ 15차 공판 (11. 28.)

● 재판부, 제2차 공소장변경 허가

-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공소권 남용과 공소사실 불특정의 사유는 공소장 변경의 전제는 아니고, 최종 판결할 때 변호인들의 주장 인정되면 공소기각을 할 것임”

▣ **16차 공판 (12. 2.)**

● 피고인측, 검찰이 빅데이터업체들로부터 받은 자료들은 개인정보로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

▣ **17차 공판 (12. 5.)**

● 검찰,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특정한 과정 설명

▣ **20차 공판 (12. 23.)**

● 피고인측, 트위터 계정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리 진행에 반대

● 검찰, 트위터 글의 실제 텍스트를 4가지 종류로 분류해 제시

▣ **21차 공판 (1. 6.)**

● 재판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

- “같은 시간에 트윗 계정 3개 이상이 2회 이상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검찰의 논리는 변호인의 지적으로 상당부분 허물어져”

- “변호인의 합리적인 의문 제기가 없을 정도로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 공판준비기일로 다시 회부

▣ **공판준비기일 (1. 13.)**

● 검찰, “3주의 시간을 주면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도록 최종 의견을 제시하겠다. 변호인이 문제삼을 일이 없도록 깨끗이 입증하겠다”

● 피고인측, 트위터 계정의 정확성에 대하여 계속 문제점 지적하며, 핵심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 정리를 요청

- 1. 27. 추가 공판준비기일에서 빅데이터 수집업체의 자료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심리하기로 함

다. 현재 상황 및 향후 일정

▣ **검찰의 2차에 걸친 공소장변경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특정 과정이 정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부각된 상태임**

▣ **검찰이 공소사실을 정리할 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분간(약 1월 말까지) 심리가 중단된 상태임**

▣ **구속사건인 별건(알선수재 사건)은 별도로 선고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구속기간의 제한은 없게 됨**

▣ **법관 정기이동시기인 2월 하순 전에 판결 선고 가능할지 여부 불투명함**